

201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76억 9천 8백만원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7,698	7,698	0	0
시 세		-	-	-	-
세외 수입	경상적	960	960	-	-
	임시적	1,352	1,352	-	-
보조금		1,896	1,896	-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490	3,490	-	-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6,802억 1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3조 2,019억 4천 3백만원 대비 14.9% 증액(4,782억 7천 2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3,201,943	3,680,215	478,272	14.9%
행정관리	소 계	319,020	313,568	△5,452	△1.7%
	행정운영경비	130,513	-	-	-
	재무활동	3	15	12	400.0%
	사업비	188,504	183,040	△5,464	△2.9%
교 부 금		2,882,923	3,366,647	483,724	16.8%

-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조정교부금’ 기정예산 2조 8,829억 2천 3백만원 대비 4,837억 2천 4백만원(16.8%)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2,927,185	2,927,185	3,405,457	478,272	16.3%
조정교부금	2,882,923	2,882,923	3,366,647	483,724	16.8%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44,114	44,114	38,083	△6,031	△13.7%
국고보조금 반환금	3	3	15	12	400.0%
노후 시설물 개선	145	145	712	567	391.0%

II. 검토의견

-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건으로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에 5억 6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4,837억 2천 4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 2백만원 등 총 3건에 4,843억 3백만원을 증액하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 사업 1건에 60억 3천 1백만원을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노후시설물 개선

-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연내 시청사 본관 형광등을 LED등기구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인바, 기정 예산(1억 4천 5백만원) 대비 5억 6천 7백만원 (390%)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11,670	145,000	566,670	
시 설 비	711,670	145,000	566,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관 LED등기구 구매설치 566,670 - 평판 LED등기구 구매 2,500개 360,000 - 철거·설치비 2,500개 206,670

〈2020까지 본관 형광등기구 100% LED등기구로 교체 추진〉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교체물량	5,691개	2,500개	2,500개	691개
LED 보급률	-	78%	93%	98%

- 동 사업은 「공공기관 건축물의 실내조명을 202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의무교체」 해야 함에 따라, 시청사 본관 형광등을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함께 밝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LED 조명기구 교체실적〉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기 교체물량	2,894개	514개	1,082개	1,289개
집 행 액	298,625	48,736	106,930	142,958
1개당 평균 구매 단가(천원)	103	94	99	111

※ '16~ '17년도는 기계실, 창고 등 교체

- 그러나, LED등기구 교체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추진할 만큼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하반기에 몰아치기식 사업 진행에 따라 줄속으로 예산이 집행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예산 불용 발생 개연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LED등기구의 종류가 상이한 바, 등기구 종류별 내구연한과 실질적 에너지 절약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한 등기구 교체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LED등기구의 종류(평판 LED등기구 18W, 평판 LED등기구 25W, 평판 LED등기구 35W, 평판 LED등기구 40W)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절약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대상	구분	용량	W	H(시)	일	월	수량	계 (KWh)	전기 요금	계 (천원)
본관 형광등	형광등	56W	56	15	25	12	5,691	1,434,132	120	172,096
	LED	35W	35	15	25	12	5,691	896,333	120	107,560
	차 액(절약액)								537,800	

※ 행정국은 금번 LED등기구 교체(56W 형광등을 35W LED로 교체)에 따라 연간 37.5%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에너지 절감량(액)〉

(기준 : 5,691개 교체)

구 분	전 력 량	전 기 요 금
절감량(액)	537,800kWh/년	64,536천원/년

※ 2017년 본관 전력사용량(11,454,772kWh/년) 대비 4.7% 절감

- 한편, LED등기구 설치(2,500개)에 따른 비용으로 구매비(144천원)가 기존 구매단가(2016년 94천원, 2017년 99천원, 2018년 111천원)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철거(19천원) 및 설치비(63천원)가 전기 표준품셈과 비교해볼 때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발주처의 자의적인 집행 여지는 없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인건비 등 산정 기준으로 전기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음.

구 분	계	산 출 내 역	비 고
계	566,670		사무실용
재료비	360,000	○ 평판 LED등기구 구매 = 360,000천원 - 144천원 × 2,500개 = 360,000천원	평판LED 조명기구
인건비	206,670	○ 철거·설치비 = 206,670천원 - 매입 현광등 철거비 : · 19,077원 × 2,500개 = 47,692천원 - 매입 LED 조명기구 설치비 : · 63,591원 × 2,500개 = 158,977천원	전기 표준품셈 적용

- 결론적으로, 행정국은 LED등기구 구매 및 재료비·인건비 산정의 적정성, 교체 대비 에너지 절약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조정교부금

-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을 기정 예산(2조 8,829억 2천 3백만원) 대비 4,837억원 2천 3백만원(16.0%)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366,647,120	2,882,923,205	483,723,915	
자치구조정교부금	3,366,647,120	2,882,923,205	483,723,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조정교부금 증가액 483,723,915 - '18년도 지난년도 보통세의 22.6% 38,450,510 - '17년도 보통세 예·결산 차액의 22.6% 445,273,405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를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합리적 자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의 여러 여건에 맞춘 기본적인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임.

- 금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8년도 본예산에 지난년도 보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미반영분(384억 5천만원)과 2017년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분(4,453억 2천 7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4,837억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18년도 지난년도 보통세 22.6%(38,451백만원)의 세부 내역〉

- '18년도 지난년도 보통세 170,135백만원 × 22.6% = 38,45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목별 구분 ^{주1)}	'18년도 지난년도 보통세
계	170,135
취득세	22,914
주민세	2,633
자동차세	94,789
지방소득세	49,799

주1) 조정교부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 세목(재산세)은 제외

〈'17년도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C×22.6%)	26,444	30,897	4,453
계(C=A+B)	117,010	136,712	19,702
보통세(A)	115,354	135,283	19,929
취 득 세	40,071	52,952	12,882
주 민 세	4,788	4,963	175
자동차세	10,545	10,838	292
레 저 세	1,268	1,409	141
담배소비세	6,343	6,347	5
지방소비세	10,042	12,378	2,336
지방소득세	42,298	46,396	4,098
지난연도 보통세(B)	1,656	1,430	-227
취 득 세	149	138	-11
주 민 세	22	61	39
자동차세	1,005	728	-277
지방소득세	480	503	23

- 관련 조례상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현 자치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 시점에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2018년 추경액	증가액
조정교부금	26,444	30,679	4,235
일반교부금	23,800	27,612	3,812
종 로 구	464	549	85
중 구	149	177	28
용 산 구	510	570	60
성 동 구	839	973	133
광 진 구	1,052	1,210	157
동 대 문 구	1,115	1,298	183
중 량 구	1,313	1,529	216
성 북 구	1,501	1,745	244
강 북 구	1,264	1,490	227
도 봉 구	1,287	1,503	215
노 원 구	1,912	2,237	325
은 평 구	1,387	1,625	239
서 대 문 구	1,062	1,225	163
마 포 구	782	900	118
양 천 구	1,174	1,349	175
강 서 구	1,319	1,541	222
구 로 구	1,231	1,422	191
금 천 구	836	962	126
영 등 포 구	655	728	73
동 작 구	989	1,138	149
관 약 구	1,367	1,604	238
서 초 구	83	97	15
강 남 구	-	-	-
송 과 구	476	549	73
강 동 구	1,033	1,190	157
특별교부금	2,644	3,067	423

- 첫째, 2018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108.6%)가 이미 8.6%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114.8%)시 14.8%를 초과하는 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 21%→22.6%)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기준재정수요는 3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준재정수요는 최근 3년간(2016, 2017, 2018.)의 추이를 통해 결정되고, 2018.9월에 용역결과가 도출될 예정임.

〈교부금 추경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변화〉

구 분	'18년도 교부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8년도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A)	'18년도 추경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B)	증감 (B-A)
강남구 포함	67.7%	108.6%	114.8%	6.2%p
강남구 제외	61.9%	104.9%	111.4%	6.5%p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보통세의 21%→22.6%) 관련 조례 개정 경위〉

※ 2015년 조례 개정시 시장 지시에 의해 조례 개정을 위한 소관 상임위나 의장단에 업무보고나 사전협의 한 번 없이 교부율을 명시(22.78%)하여 인상을 기정사실화 발표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시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심각히 저해한 사안임.

○ 추진경위

- 2015. 7. 21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정교부율 인상 합의문(「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일방 발표
 - ※ 조정교부율 인상(현행 21% → 조정 22.78%)
 - ※ 2016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목표로 인상안 도출(2015년 97.1%)
 - ※ 2016년도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 2,862억원
- 2015. 10. 30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 (현행 21% → 조정 22.76%)
- 2015. 11. 9 관련 조례 및 예산 의회 의결 전 각 자치구로 조정교부금액 가내시
- 2015. 12. 21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진통 끝에 관련 예산안과 함께 조례안 의회 의결(현행 21% → 조정 22.6%(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기준)로 수정 가결)

※ 재원조정교부금 인상 관련 주요 쟁점

- ①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한번 인상한 교부율 인하 어려움
- ② 복지 수요 및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교부율 상향 조정과 같은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개정 변경보다는 재정보전 등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조정교부금 목적(자치구간 균형발전) 훼손)
- ③ 자치구간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구는 혜택 미비)
- ④ 추가적인 재원확보 노력 없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은 시 재정여건(정상적 지출 과다) 만들 어렵게 하여 광역사업 추진에 차질 발생

- 아울러,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 비용에 의한 기초 수요액 산정이 실제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타 광역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구 분	'18년도		증감 (B-A)
	교부 전	교부 후	
부 산	46.5%	77.5%	31.0%
대 구	41.9%	81.1%	39.2%
인 천	51.1%	92.0%	40.9%
광 주	43.1%	별도 산정하지 않음	-
대 전	35.7%	별도 산정하지 않음	-
울 산	46.7%	72.3%	25.6% ¹

※ 타 광역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추경 미포함된 당초예산 기준임.

-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4,453억원)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할 경우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들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당초 보통세의 세입추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서 보통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정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13년도	18,330	18,711	381	◦'15년 본예산 전액 정산
'14년도	19,763	20,370	607	◦'15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277억원 상계)
'15년도	22,213	25,585	3,372	◦'16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416억원 상계)
'16년도	23,915	28,566	4,651	◦'17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 잔액 416억원 상계)
'17년도	26,444	30,897	4,453	◦'18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 셋째,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지난년도 보통세 수입’의 미반영분 (385억원)은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 1)을 근거로 조례 개정 없이 반영하여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정교부금 인상 합의문(「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2))왔으나, 2018년 본 예산 편성 시 서울시 재정 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편성 제외 하였다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재차 반영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상황 변화에 따라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행정국과 예산부서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7년도 보통세의 결산차액의 경우는 오히려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과소 (-227억원) 발생하였는바, 2018년도 미반영분을 미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지방재정법」 2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2) 2016년부터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년도 수입(보통세 체납시세 징수액)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의 신규 재원으로 반영하여 자치구에 교부

- 아울러, 조정교부금 교부시 ‘지난년도 세입’ 미반영분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및 조례 개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넷째, 금번 추경으로 특별조정교부금도 424억원이 추가적으로 증액되는바, 일반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의 연말 몰아치기식 교부 및 집행으로 자치구의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자치구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포함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와 관련하여 기정 예산(441억 1천 3백만원) 대비 60억 3천만원(14.7%)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8,082,675	44,113,668	△6,030,99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0,840	290,840	-	
사무관리비	1,378,667	1,378,667	-	
공공운영비	53,070	53,070	-	
국내여비	158,000	158,000	-	
기타부담금	36,202,098	42,233,091	△6,030,993	○ 선거관리경비 정산 집행잔액 △6,030,993 (준비·실시 및 후보자·정당 보전비용)

※ 시·구 선관위 선거사무 : 투개표 사무원 위촉, 투표소 설치,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소송·소청 비용 등

○ 본 감액 건은 관련법령(「공직선거법」 제277조³⁾)에 따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리 준비·실시 및 후보자와 정당 보전비용 분담금의 정산 납부요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정하려는 것임.

※ 보전비용은 후보자 및 정당의 증가로 예상보다 증액(1,086,473천원)되었으나, 선거경비(준비·실시) 집행잔액(7,117,466천원)으로 감액(6,030,993천원) 납부 요구됨.

○ 다만, 현행제도하에서는 선거관리경비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바, 향후 행정국에서는 선거준비·실시경비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 및 요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기타부담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타부담금)	선거관리경비 집행내역			
	편성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집행률(B/A)
2010년 5회 지방선거	35,051	25,502	4,349	72.8%
2014년 6회 지방선거	39,283	30,877	8,406	78.6%
2018년 7회 지방선거	42,233	36,202	6,031	85.7%

3)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 보궐선거 실시 후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 ※ 다만, 선거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가 선거보전비용을 청구하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후보자가 청구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요청을 하고 그 비용을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공직선거관리규칙」 제7조).
-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요청한 선거보전비용을 심사하여 보전 비용 결정 후 60일 이내에 시와 정산하도록 규정(「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제2항)하고 있음.

【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기준(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 행정국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정 예산(3백만원) 대비 1천 2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액 및 2016년 결산금액중 미반납된 이자액에 대한 반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832	3,085	12,747	
반 환 금 및 기 타	15,832	3,085	12,7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2,747 - 2016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7 - 2017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5,430 - 2017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4,725 - 2017년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2,585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관련법령(「지방재정법」 제32조의64)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국고보조금 반환 절차〉



※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임.

- 다만,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사업 등의 경우 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보조금 반환금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설계 및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4)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최근 3년간,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납내역〉

(단위 : 원)

연번	연도	사업명	요구액
		계	35,411,840
1	2014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3,502,120
2	2015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198,500
3	2016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885,860
4	2014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6,493,710
5	2015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1,829,850
6	2016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24,330,800

마.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18. 7. 30 기준) 중 현재 집행률(50%이상)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태양광 시설 설치’,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지원’,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의 경우는 예산 집행 실적이 전무한바, 행정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예산과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사업 등의 경우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바, 행정국은 연말 몰아치기식의 부실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업 계획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행정국 소관 사업(‘업무택시제 운영’,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들 중 2018년도 연말까지 전액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의 경우, 예산 감액조정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의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행정국 집행사업(50%이상) 현황(2018. 7. 30 기준)〉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행정장비구매	854,582	199,300	655,282	76.6%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집기 구매, 공용차량 조달구매, 사무환경 개선사업 장비구매 등 집행예정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379,365	102,254	277,111	73.0%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비 등 12월까지 전액 집행예정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381,365	108,695	272,670	71.5%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등 12월까지 95% 이상 집행예정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332,412	93,289	239,123	71.9%	▶투어코스 확대, 북측 예술담 조성 등 하반기 집행예정이며 진로체험(연중) 및 시민전시(연중) 등은 월별일정에 맞게 진행중으로 12월 까지 전액 집행예정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800,000	-	800,000	100%	▶현재 계약심사 완료 후 입찰공고 중으로 12월까지 전액 집행예정
태양광 시설 설치	308,700	-	308,700	100%	▶설치작업 진행중으로 8월 준공 후 전액 집행예정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59,500	20,010	39,490	66.3%	▶부서별 모니터링 사업 추진중으로 부서별 재배정 완료 후 12월까지 전액 집행예정
업무택시제 운영	250,000	103,753	146,247	58.5%	▶6.13.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행사 등 외부출장요인이 줄어들어 집행액 감소 ▶직원 이용 지속 홍보 및 부서별 집행을 통해 12월까지 집중 집행예정 ※ 최종 집행액 : 212,635천원(85%) 전망
주요 시책사업 추진	80,000	34,449	45,551	56.9%	▶하반기 주요행사 및 시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소요비용 집행예정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상담관 운영	210,000	80,503	129,497	61.6%	▶민원상담관 인건비 지출로 총 10개월 분 중 4개월(3~6월분) 지출완료 ▶연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935,686	354,861	580,825	62.0%	▶사업실적이 가시화되는 하반기에 표창수여가 집중되어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514,740	241,561	273,179	53.0%	▶하반기 퇴임식이 개최되는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81,000	32,351	48,649	60.0%	▶하반기 전보 및 파견자 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 금액 집행 예정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297,784	131,722	166,062	55.7%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매월 일정금액 지출 중으로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 (현 집행액은 6월 임금지급분까지만 포함)
인사전산시스템 운영	89,375	43,440	45,935	51.4%	▶반기별로 1회씩 유지보수비 집행 중이며 유지보수 용역이 완료되는 12월까지 전액 집행예정
공무직 노사관리	184,486	63,153	121,333	65.7%	▶산업안전보건교육(10월), 노사합동워크숍(10월),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채용(11월) 등 12월까지 전액 집행예정
기본경비(인사)	119,053	54,379	64,674	54.3%	▶직원 급량비, 부서운영 소모품구입 등을 통해 연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126,730,356	59,280,632	67,449,724	53.2%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14,000	6,833	7,167	51.1%	▶하반기 공무국외여행 심사개최시 심사위원 검토수당 및 심사위원회 운영경비 등(6,400천원)으로 정상집행 예정
직장교육활성화	1,079,950	315,696	764,254	70.7%	▶'18.8.20 현재 원인행위 기준 70.9%집행(765백만원) ▶하반기 직장교육 지원(70백만원), 멘토링 지원(70백만원), 직장외국어 경비(100백만원) 등으로 정상 집행예정
명사초청 특강 운영	20,000	4,994	15,006	75.0%	▶6.13 지방선거에 따라 상반기 1회 개최, 하반기 2회 개최 예정
학습조직 운영 및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	110,270	52,853	57,417	52.0%	▶하반기 우수동아리 포상금으로 17,100천원 집행예정(10월 중)이며 연말까지 학습동아리 액션미팅 18팀 지원 시 연말까지 정상 집행 가능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20,000	-	20,000	100%	▶6.13 지방선거에 따라 행사 자제, 간부공동연수 등 하반기 소통행사 개최로 정상 집행 예정
서울시 학습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94,868	21,250	73,618	77.6%	▶계약(85,000천원)체결 후 용역수행중에 있어 용역완료 후 12월까지 정상집행 예정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856,800	678,184	1,178,616	63.4%	▶ 하계 체육문화 행사 개최시기 미도래 - 10~11월 하계 체육문화 행사 개최(250백만원) ▶ 공연·문화 바우처 사업 - 11월까지 공연·문화바우처(350백만원) 집행 ▶ 체력단련실 월별 운영비 집행 - 운동복, 수건 등 피복비 지출 등 12월까지 정상 집행 예정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8,002,200	2,111	8,000,089	99.9%	▶사업 평가완료(11월) 후 자치구 보조금 전액집행 예정
시·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240,600	70,321	170,279	70.7%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여시 집행 (10월),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보조금 집행 예정(11월)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125,129	60,498	64,632	51.6%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유지보수(3, 4분기) 예산 및 도로명주소 홍보예산 11월 집행 예정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학술용역 실시	73,000	850	72,150	98.8%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61,000천원 집행 예정(9월)(낙찰차액 9,000천원 미집행) ▶용역 결과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비용 2,150천원 집행 예정(9월)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348,000	106,641	241,359	69.3%	▶3월 유지보수 계약으로 9월까지 전액 집행예정
시민 시상제도 운영	86,490	2,612	83,878	96.9%	▶시민봉사상 예산 29,690천원 및 명예의전당 40,000천원 9~10월 집행예정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	289,168	140,871	148,297	51.2%	▶여름방학 인턴십 종료 후 인건비 등 집행 중으로 8월말 현재 90%이상 집행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운영	17,600	5,672	11,928	67.7%	▶하반기(9월 현장견학, 10월 워크숍 등) 4백만원 지출예정 ▶재배정예산 8,168천원 자치구 재배정 완료, 연말까지 전액 집행예정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200,000	-	200,000	100%	▶하반기(9월 이후) 보조금 교부 예정
기본경비(자치)	137,393	43,866	93,527	68.0%	▶백서, 각종 교육자료 등 하반기(9월~12월) 집중 집행예정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655,667	202,887	452,780	69.0%	▶용역사업 추진중으로, 사업종료 되는 12월까지 94.7%(621,076천원) 집행 예정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73,955	19,416	54,539	73.7%	▶정보공개심의회 운영(~12월, 13백만원), 연차보고서 발간 및 자치구·투출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10월, 27백만원) 등 집행 예정
청도문서고 운영	79,919	39,356	40,563	50.7%	▶공공요금, 연료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 비용으로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
기록정보관리	1,872,077	660,010	1,212,067	64.7%	▶중요기록물 정리(90.1%),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99.7%), 전자기록물 이관(93.5%) 등 사업별 준공시기(11~12월)에 따라 집행 예정

수련원유지 및 관리	151,200	69,085	82,115	54.3%	▶객실 창호 교체 집행 예정(10월까지)
수련원 축탁계약 직(청소) 보수 및 세탁물위탁	158,164	75,472	82,692	52.2%	▶축탁직 급여 및 세탁물 외주 처리비 등 12월까지 집행 예정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528,213	69,168	459,045	86.9%	▶서울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 사업, 서울 기록원 홍보 등 사업별 준공시기(11~12월)에 따라 집행예정
서울기록원 디지 털 아카이브 구축	1,255,454	-	1,255,454	100%	▶계약 체결(7월초) 후 사업 추진 중, 사업종료 시기에 맞춰 집행완료 예정 - 8월 선금 지급완료(553백만원, 44%)
서울기록원 건립	38,823,471	8,466,851	30,356,620	78.1%	▶사업 추진중으로 사업종료되는 12월까지 집행완료 예정
기본경비(기록원)	237,505	-	237,505	100%	▶서울기록원 준공 이후 소요예정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